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59**

제출연월일 : 2020. 11. .

제 출 자: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가.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8호가 개정(2020.4.21.)되어 시행(2020.10. 22) 됨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구역 내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나. 건축분야별 심의 중 녹색건축심의 전문위원회를 추가하여 구성하여 전문성 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로 규정(안 제3조제1항제8호)

나. 건축분야별 건축심의 중 녹색건축심의 전문위원회 추가구성(안 제3조의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10월 22일 ~ 11월 11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 의견 없음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 가. 다중이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 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취락 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 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일단의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가구)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사.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 아. 특별건축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건축완화 대상 건축물로 영 [별표1] 1호, 2호, 3호, 4호,

11호, 14호의 단일용도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제3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녹색건축물 조성 전문위원회

제26조제3항제2호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 ·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서명	주택과		
	부서장	건축과장		
	직위·성명	왕진우		
입	팀장	건축행정팀장		
안	직위·성명	이태민		
자	담당자	건축행정팀장		
	성명·전화번호	이태민		
	경당·선확번오	(790-520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①「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 하기 위해하남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법 제8 4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u><삭 제></u>
4.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u><삭 제></u>
5.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영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일것	<삭 제>
6.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u>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의 규정</u> 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u>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u>
가. 다중이용건축물	<u>가. 다중이용건축물, 숙박시설, 위</u> <u>락시설</u>
<신 설>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 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9. (생략)

② (생략)

제3조의2(전문위원회) 하남시장(이하 저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100 실 이상의 건축물
- 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증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 터 이상으로서 임대후 분양전 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다)
- 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취락 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일단의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가구)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u>사.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u> <u>에서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u> 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 아. 특별건축구역·도시재생활성 화지역·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건축 완화 대상 건축물로 영 [별표 1] 1호, 2호, 3호, 4호, 11호, 1 4호의 단일용도 건축물 및 복 합건축물
-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	32	<u> </u>	의	20	(전	1 -	근의	위.	원	호)	-	_	 	_			-			-
	-			-					_			_		 -				-			-
	_			-					_			_		 _			-	_			-
	-			_		-		-					-	 	-	-		-	_	– ,	

1. · 2. (생략)

<신 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생략)
-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정하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정 조경면적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옥상조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옥상조경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 3. ~ 6. (생략)
- ④・⑤ (생략)
- 제29조(도로의 지정) 건축법 제45조제1 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2. (생략)
 -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신고)시 도로로 이용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나 <u>당</u> <u>해</u> 통로가 없으면 기존 건축물의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 0	(혀행과	フレウト
- 1	• 7	(연앵과	산음)

3. 녹색건축물 조성 전문위원회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3.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도로의 지정)
 1.·2. (현행과 같음)
3
<u>해당</u>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3. 삭제 <2014. 11. 11.>
-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6. 1. 19.>
-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 19.>
-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4. 11. 28., 2018. 9. 4.>
-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

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 나. 삭제 <2014. 11. 11.>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 마. 삭제 <2014. 11. 28.>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 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 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 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 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 12. 12.]

-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3. 삭제 <2014. 11. 11.>
 -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6. 1. 19.>
 - 6. 삭제 <2020. 4. 21.>
 -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

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 19.>
-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4. 11. 28., 2018. 9. 4., 2020. 4. 21.>
-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 마. 삭제 <2014. 11. 28.>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

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 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 12. 12.]

[시행일: 2020. 10. 22.] 제5조의5

부칙 <제31100호, 2020. 10. 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5조제6항제1호가목, 제46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제46조제4항제4호·제5호, 제62조제1 항제3호, 제6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 2021년 8월 7일
 - 3.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2조(건축기준 등의 강화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방화문 구분에 관한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제46조제4항제4호,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 2. 방화구획에 관한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 3. 산후조리원에 관한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 4.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 제3조(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5조제5항제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